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8허7651 등록무효(특)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담당변리사 공호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조호영, 이의훈

변 론 종 결 2019. 3. 12.

판 결 선 고 2019.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8. 23. 2018당3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 1) 발명의 명칭 : 마이크로 커터가 형성된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12. 19./ 2012. 9. 12./ 특허 제1184144호
-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박판의 강재로 된 각질제거판(24)의 외측면(21)으로부터 각질(100)을 제거하는 요소인 마이크로 커터(20)가 다수 배열되는 각질제거판(24)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커터(20)는 외측면(21)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23)이 0.5mm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을 따라 평면 돌출판(23)과 외측면(21) 사이에서 각질(100)이 내측면(22)으로 통과될 수 있는 통과홀(26)이 형성되고, 상기 통과홀(26) 사이로 외측면(21)과 평면 돌출판(26)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고,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에는 예각의 절삭날(25)이 형성되어 상기 연결부(27)를 제외한 양방향에서 각질(100)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질제거판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기재된 마이크로 커터(20)가 다수 배열된 각질제거판(24)이, 각질제거기(10)의 테두리(12) 내측에 설치되고, 이 테두리(12)로부터 연장된 손잡이(11)가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질제거기.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기 각질제거기(10)의 테두리(12)에 조립되는 뚜껑(30)은 뚜껑바닥(32)과 외곽으로 뚜껑테두리(31)가 형성되고 양측으로 테두리(12)에 고정되는 고정턱(33)이 형성되어, 상기 테두리(12)의 상측, 하측 어느 쪽에서 상기 뚜껑(30)을 조립해도 동일한 상태로 조립되고 뚜껑(30)의 고정턱(33)에 의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뚜껑테두리(31)가 결합되는 각질제거기 테두리(12)의 외측면이 상하가 대칭되는 구조를 이루어 상기 테두리(12)에 뚜껑(30)이 결합되는 상태에 따라 각질제거판(24)의 보호커버가 될 수도 있고 제거된 각질의 수거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질제거기.

4) 발명의 주요 내용

①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제거기에 있어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요소인 마이크로 커터가 형성된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에 관한 것이다.

② 배경기술

<0002> 종래의 각질제거를 위한 제거 메커니즘(Mechanism)은 크게 나누어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바닥에 형성된 단단한 각질을 가루가 되도록 갈아내거나, 면도칼을 부착하여 잘라내거나, 피부 각질을 녹이는 살리칠 산 등의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③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05> 본 발명은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각질제거기처럼 각질제거 시 힘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면도칼처럼 피부를 다칠 염려가 전혀 없어야 한다, 약품사용의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필수 해결 과제이다.

<0006>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딱딱한 각질을 연마제 등으로 갈아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날이 위험스러워 다칠 염려가 없어야 하고, 유해 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출된 것이 표면으로부터 미세하게 돌출된 작은 판의 양측에 미세한 날이 형성된 마이크로 커터가 다수 개가 배열된 각질제거판으로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각질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과제 해결 수단

<0009>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판의 강재로 된 각질제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각질을 제거하는 요소인 마이크로 커터가 다수 배열되는 각질제거판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커터는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이 0.5mm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평면 돌출판의 외곽을 따라 평면 돌출판과 외측면 사이에서 각질이 내측면으로 통과될 수 있는 통과홀이 형성되고, 상기 통과홀 사이로 외측면과 평면 돌출판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상기 평면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고, 상기 평면 돌출판의 외곽에는 예각의 절삭날이 형성되어 상기 연결부를 제외한 양방향에서 각질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여,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가장 효율적이고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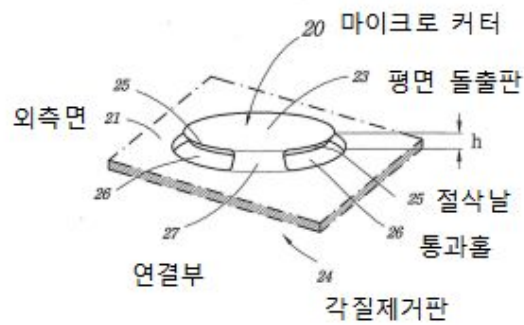
⑤ 발명의 효과

<0011>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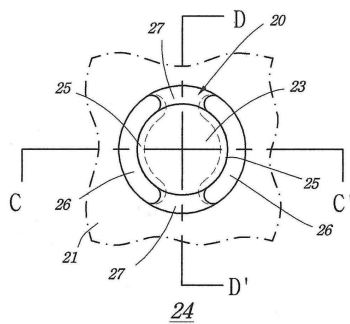
많이 소요되지 않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㉔ 주요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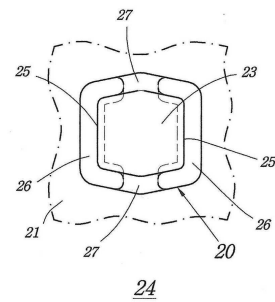
[도 2] 마이크로 커터 사시도



[도 5] 마이크로 커터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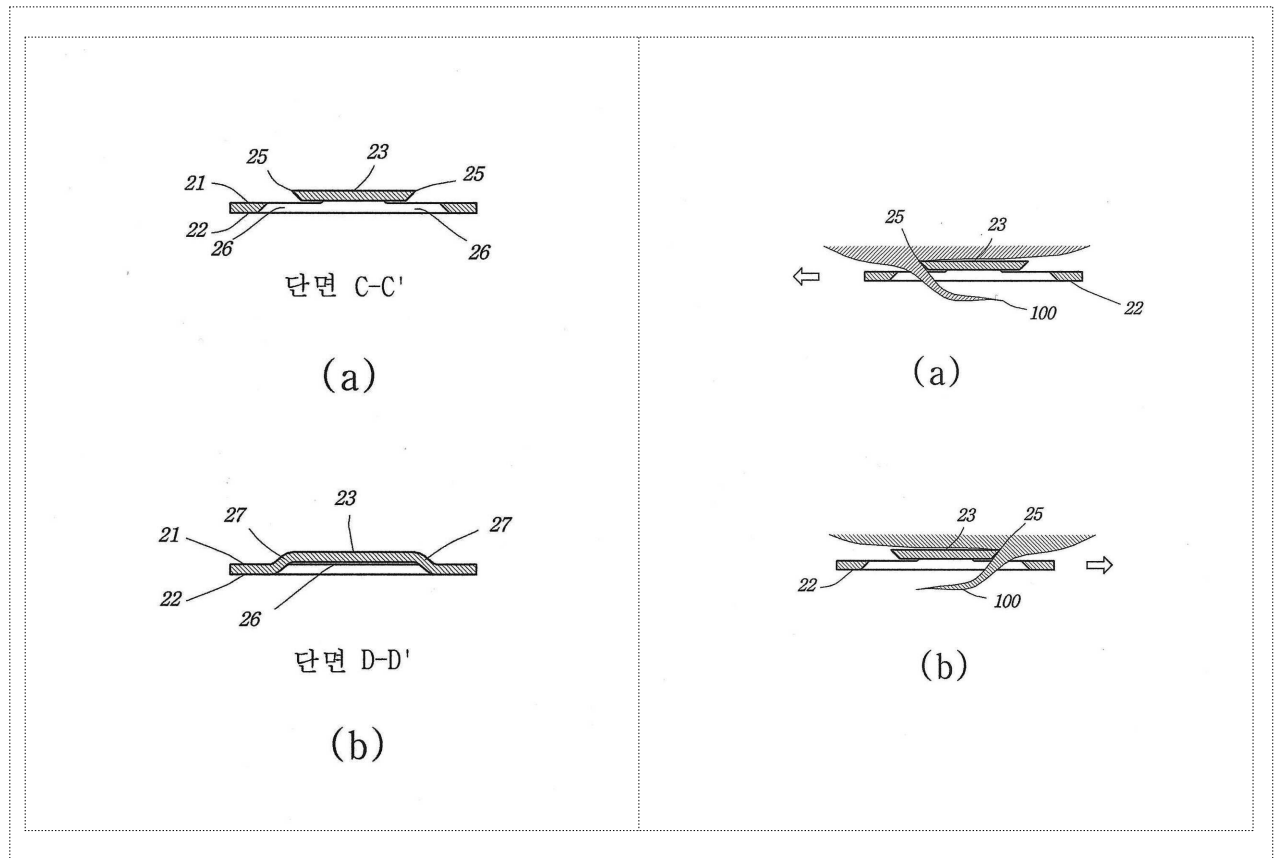


[도 9] 마이크로 커터(사각형)의 평면도



[도 6] 도 5의 단면도

[도 7] 마이크로 커터 사용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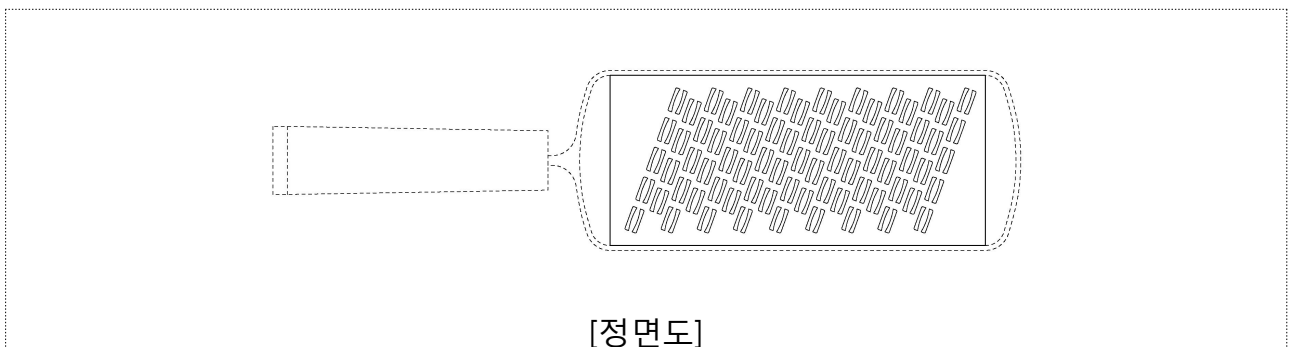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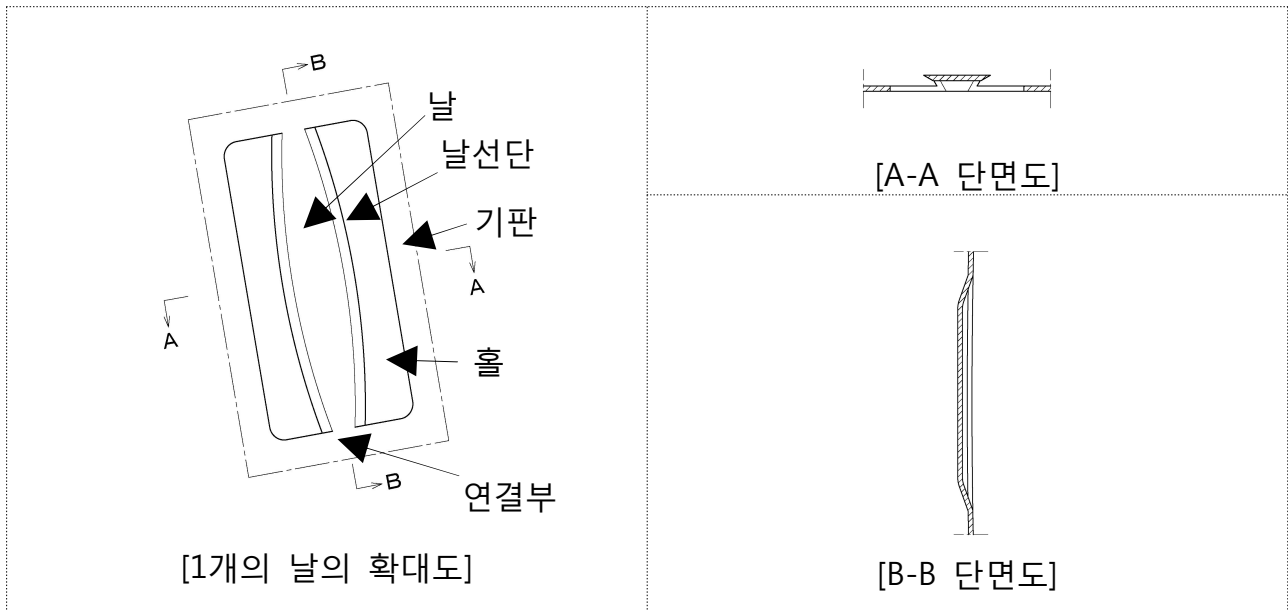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가) 2010. 8. 23. 공고된 일본 의장등록공보 제1395468호로서 '강판'에 관한 의장이다.

나) 강판의 주요 도면 및 의장에 관한 물품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치즈, 야채, 과일, 콩, 또는 초콜릿 등을 갈기 위한 강판이다. 각 날은 예를 들면 에칭에 의해 형성된다. 각 날은 강판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다. 1개의 날의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에서 갈 수 있다. A-A 단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날은 프레스 가공 등에 의해 기판보다도 높은 위치에 연장되어 있다.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가) 미국 D1)사가 인터넷 판매 사이트 아마존(Amazon.com)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 질제거기인 'D 풋 버퍼(D Foot Buffer)'에 관한 것으로서, 위 'D 풋 버퍼'에 관한 2010. 3. 12.자 구매후기가 확인된다.

나) 'D 풋 버퍼'를 나타낸 사진들(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커버의 결합 상태에 따라 커버가 각질제거판의 보호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제거된 각질의 수거용기가 될 수도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1) D은 E 주식회사의 한 사업부(division)이다(갑 제10호증의 2 참조) 이하에서는 'D사'라 지칭한다.

커버가 버핑 표면(buffing surface)에 장착된 상태



커버가 뒷면에 장착된 상태



3) 선행발명 3(갑 제7호증의 1 내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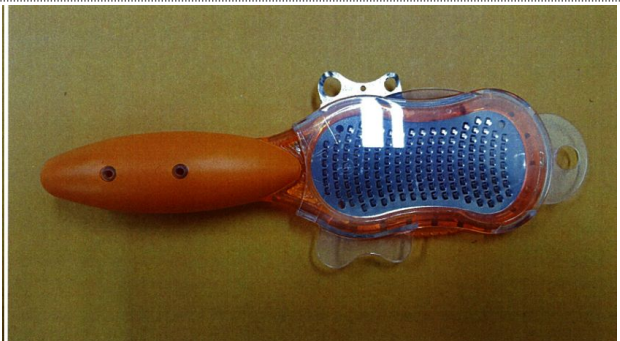
가) D사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감귤류 과일 깎는 도구(D Ultimate Citrus Tool)에 관한 것으로, 2011. 3. 5.자 구매후기가 확인된다.

나) 선행발명 2와 마찬가지로, 커버가 도구의 앞면 또는 뒷면에 장착될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커버가 도구 앞면에 장착된 상태



커버가 도구 뒷면에 장착된 상태



4) 선행발명 42(갑 제8호증)

가) 2008. 4. 17.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8/0091216호에 기재된 각질 제거기에 관한 것이다.

2) 심판 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행발명이다.

나) 주요 내용

①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발, 팔꿈치 및 기타 인체 부위에서 죽은 피부, 각질 및 보기 흉하게 적층된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좋은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불필요하게 갈아내지 않고 보기 흉한 피부를 아프지 않게 제거하는 수동 장치에 관한 것이다.

② 배경기술

【0010】 죽은 피부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의 수 및 종류는 방대하고 단지 피부를 갈아 내는 사포, 줄 및 손톱줄과 같은 연마재로부터 이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실제로는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면도기, 나이프, 스크레이퍼 등의 블레이드 타입의 장치까지, 구멍 뚫린 금속 장치까지 다양하다.

【0014】 이들 모든 제품은 화장 또는 의료 목적의 사용에 관계없이, 살아있는 성장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과다 사용에 영향을 받기 쉽다.

③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21】 본 발명의 목적은 매우 개선된 피부 제거를 제공하면서, 신뢰성 있고,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킨 케어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④ 과제 해결 수단

블레이드 몸체는 블랭크와, 장치가 처리되어야 할 피부를 가로질러 왕복 운동할 때 제거되어야 할 피부에 접촉하도록 블랭크의 면 위로 일정 길이 상측으로 돌출하는 동일 평면 상의 균일하고 대향하는 절삭날로 구성된다(요약 참조).

【0049】 본 발명은 2방향으로 작동하는 블레이드 몸체를 의도한다. 도 6 및 7을 참조하면, 그러한 블레이드 몸체 71이 나타나 있다.

【0050】 도 8 내지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2방향 절삭치(tooth)가 자세하게 나타난 몇 개의 전개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절삭치 73은 분리되고 대향하는 절삭날(edges) 75 및 76을 획정하는 요소가 구비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날 75 및 76은 동일 평면상이고 블랭

크 78의 면으로부터 소정의 작은 양만큼 돌출되어 있는데, 절삭날이 처리되어야 할 피부 부분에 노출되도록 블랭크로부터 절삭날이 형성되어 있다. 여분 피부의 최소 양만이 장치의 주어진 스트로크에서 제거되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대향하는 절삭날 75, 76의 블랭크 78 평면에 대한 높이 "H"가 0.025" 이하의 치수로 주의 깊게 제어된다.

㉔ 주요 도면

도 6. 블레이드 몸체의 상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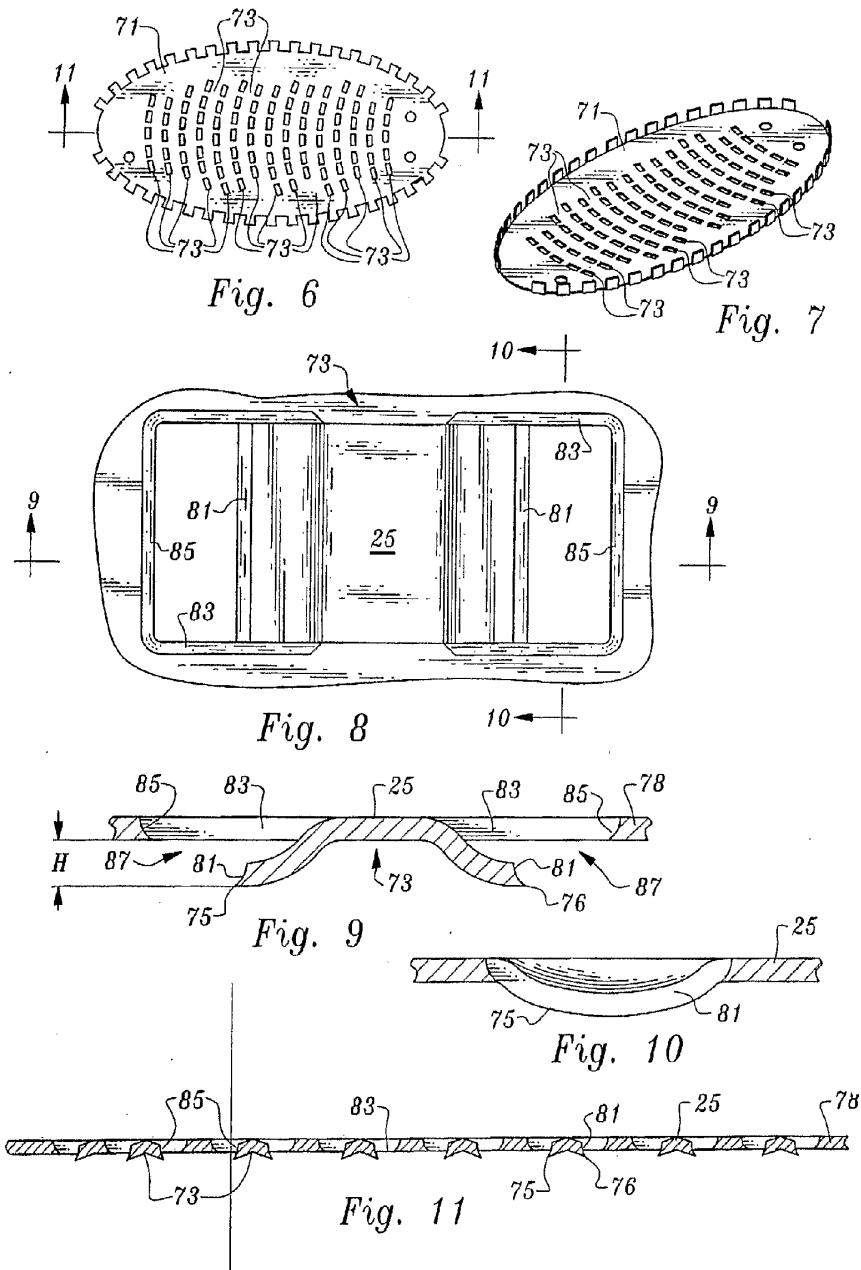
도 7. 블레이드 몸체를 하측에서 보았을 때의 사시도

도 8. 커터 블레이드의 돌출된 절삭면을 설명하는, 도 6 커터 블레이드 일부의 확대 상면 평면도

도 9. 도 8의 선 9-9에 따른 단면도

도 10. 도 8의 선 10-10에 따른 단면도

도 11. 도 6의 선 11-11에 따른 단면도



5) 선행발명 5(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가) 제이캐스트(J-CAST) 사이트에 2008. 6. 19.자 기사로 게재된 강판형 각질 케어

상품 'G(Wide Scratch)'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사에는 "「강판」으로 「발뒤꿈치」의 각질을 깎아 버린다 !"는 제목으로, "F가 2008. 6. 17. 딱딱해진 발뒤꿈치의 각질을 케어하는 강판형 각질 케어 상품 G를 발매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목공 용구와 치즈용 강판의 브랜드로 유명한 'D과의 합작 상품'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선행 발명 2와 선행발명 5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다툼 없는 사실).

나) 갑 제12호증의 2는 '[G] 두꺼운 각질도 한꺼번에 깎이는 발뒤꿈치 강판'이라는 제목 아래 2008. 12. 23.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으로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한 날로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깎을 수 있다"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12호증의 1(사진)	갑 제12호증의 2(동영상) 중 50초, 54초, 1분 5초의 각 캡처 부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2.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3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³⁾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항 4는 선행발명 1, 2 또는 1, 3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8. 8. 23.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4항 발명 또한 선행발명 1, 2 또는 1,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4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3) 특허심판원에서는 선행발명 1로 갑 제4호증(일본 의장등록공보 제1395468호)이 아닌, 이의 미국 대응 특허공보(미국 디자인 특허공보 US D635412 S)가 제출되었으나, 양 공보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구성이 선행발명 2, 3 및 5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4 및 2의 결합', '선행발명 1 및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4 및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및 5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4 및 5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 및 4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피 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4 및 5와 그 기술 분야, 목적,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 4 및 5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선행발명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달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 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선행발명 1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굳은살 등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에 관한 것으로 미용분야에 이용되는 발명이고, 선행발명 1은 치즈, 야채, 과일, 콩 또는 초콜릿 등을 갈기 위한 강판에 관한 것으로 주방분야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절삭 대상물(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질', 선행발명 1은 '식재료')을 일정한 두께로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세한 절삭날이 다수 배열된 판'으로 구성된 도구라는 점에서 그 적용된 기술적 구성 또는 과제해결 수단이 동일하다.

③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절삭날을 핵심기술

로 하는 회사들(카이지루시 주식회사, D사)이 주방 도구뿐만 아니라 미용·위생 도구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사는 2005년부터 강판 형태의 각질제거기인 '풋 파일(foot file)'을 생산한 사실, 'F'는 2008. 6. 17.부터 D사와 협업하여 강판 형태의 각질제거기인 'G'를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선행발명 4, 5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 출원 전에 판매 또는 공개되었던 강판 형태의 각질제거기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위와 같은 핵심적 기술구성의 동일성, 실제 기술이 전용된 상품이 시판되고 있는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강판'의 기술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각질' 제거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1	박판의 강재로 된 각질제거판(24)의 외측면(21)으로부터 각질(100)을 제거하는 요소인 마이크로 커터(20)가 다수 배열되는 각질제거판(24)에 있어서,	치즈, 야채, 과일, 콩 또는 초콜릿 등을 가는 날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기판(강판)
2	상기 마이크로 커터(20)는 외측면(21)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23)이 0.5mm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고,	날은 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긴 곡선 평면으로 된 돌출판이 기판보다 높은 위치에 돌출 형성
3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을 따라	날과 기판 사이에 치즈, 과일 등 재료가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평면 돌출판(23)과 외측면(21) 사이에서 각질(100)이 내측면(22)으로 통과될 수 있는 통과홀(26)이 형성되고,	통과될 수 있는 홀 형성
4	상기 통과홀(26) 사이로 외측면(21)과 평면 돌출판(26)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고,	홀 사이로 기판과 날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날의 양 측부 폭 전체에 형성
5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에는 예각의 절삭날(25)이 형성되어 상기 연결부(27)를 제외한 양방향에서 각질(100)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질제거판	날의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
주요 도면	(a)	

다)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도구 판(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질제

거판', 선행발명 1의 '기관')의 외측면에 미세 칼날부(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이크로 커터'; 선행발명 1의 '날', '홀', '연결부' 등)가 다수 배열되어 있고, 상기 미세 칼날부가 판의 외측면(기관)으로부터 돌출된 평면(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 돌출판', 선행발명 1의 '날')에 형성되어 있으며, 위 돌출된 평면과 외측면 사이에 통과 구멍(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통과홀', 선행발명 1의 '홀')이 형성되어 있고, 위 돌출 평면의 외곽에 예각 형태의 절삭 기능을 하는 날(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삭날', 선행발명 1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 제거판'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야채, 과일 등의 식재료를 깎는 '강판'이어서 도구의 용도에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평면 돌출판(23)이 외측면(21)으로부터 0.5mm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날이 기관의 외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높이의 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절삭날(25)이 위치한 평면 돌출판(23)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평면 돌출판(23)과 외측면(21)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서 날선단이 위치한 부분의 날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상⁴⁾이고 날과 기관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날의 양측부 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미세 칼날부의 위치,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라) 차이점에 대한 검토

4) 원고는 선행발명 1의 날 형상을 '기다란 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 차이점 1

먼저 차이점 1(도구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선행발명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기관에 미세 칼날부가 다수 배열되어 있는 강판 구조를 각 질제거판에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이 미세한 절삭날이 다수 배열된 판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절삭 대상물을 절삭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점, ② 절삭날을 핵심기술로 하는 회사들이 주방 도구뿐만 아니라 미용·위생 도구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점, ③ 실제 위 회사들에 의하여 강판 형태의 각질제거기 상품이 시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 당시 선행발명 1로부터 '각질제거기' 용도의 전용을 도출해내는 것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차이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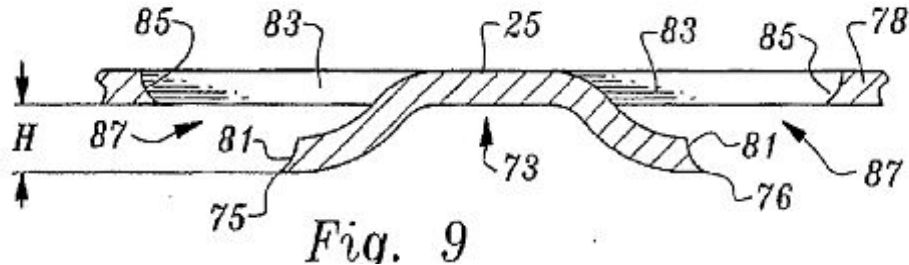
다음으로 차이점 2(돌출판의 높이 한정)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설명에는 평면 돌출판(23)의 돌출 높이 수치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즉 적절한 두께의 각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평면 돌출판(23)의 높이를 0.5mm 이하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0014] 마이크로 커터(20)는 주로 스테인리스 재료로 된 박판의 외측면(21)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평면 돌출판(23)이 높이 h만큼 돌출되어 단차를 형성하고 이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을 따라 장공 형태의 각질 통과홀(26)이 형성되고 외측면(21)과 평면 돌출판(23)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통과홀(26) 사이에서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고, 평면 돌출판(23) 외곽을 따라 예각의 절삭날(25)이 연결부(27)를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각질을 잘라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여기에서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높이 h는 사용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0.2mm~0.5mm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평면 돌출판(23)의 크기 또한 사용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소 2mm에서 최대 5mm정도가 적합하다. 이 평면 돌출판(23)의 높이에 따라 각질을 벗겨내는 두께가 결정되고 잘라진 각질(굳은살)(100)은 각질 통과홀(26)을 통과하여 각질제거판 내측면(22) 방향으로 흘러들어간다.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 1에는 "A-A 단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날은 프레스 가공 등에 의해 기관보다도 높은 위치에 연장되어 있다."(갑 제4호증 5면 【의장에 관한 물품의 설명】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강판 형태의 각질제거기인 선행발명 4가 각질제거기 날의 돌출 높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0.025"(0.635mm) 이하'로 한정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날에 '적정 두께의 각질 제거'라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선행발명 4의 수치한정을 결합하여 선행발명 1의 날 높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0.5mm 이하)과 같이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0050] 각각의 날 75 및 76은 동일 평면상이고 블랭크 78의 면으로부터 소정의 작은 양만큼 돌출되어 있는데, 절삭날이 처리되어야 할 피부 부분에 노출되도록 블랭크로부터 절삭날이 형성되어 있다. 여분 피부의 최소 양만이 장치의 주어진 스트로크에서 제거되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대향하는 절삭날 75, 76의 블랭크 78 평면에 대한 높이 "H"가

0.025" 이하의 치수로 주의 깊게 제어된다.



피고는 선행발명 1과 4는 그 기술분야, 기술적 해결과제가 상이하여 결합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차이점 1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과 4가 서로 다른 기술분야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강판 형태의 각질제거기가 시판 또는 공개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강판 분야의 기술구성과 각질제거기 분야의 기술구성을 종합 또는 결합할 동기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차이점 3

다음으로 절삭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적 특징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차이점 3(미세 칼날부의 위치, 형상 및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및 도면의 아래 해당 기재 부분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면 돌출판(23)의 형상을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하고, 위 돌출판의 외곽을 따라 절삭날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질제거판의 외측면과 위 돌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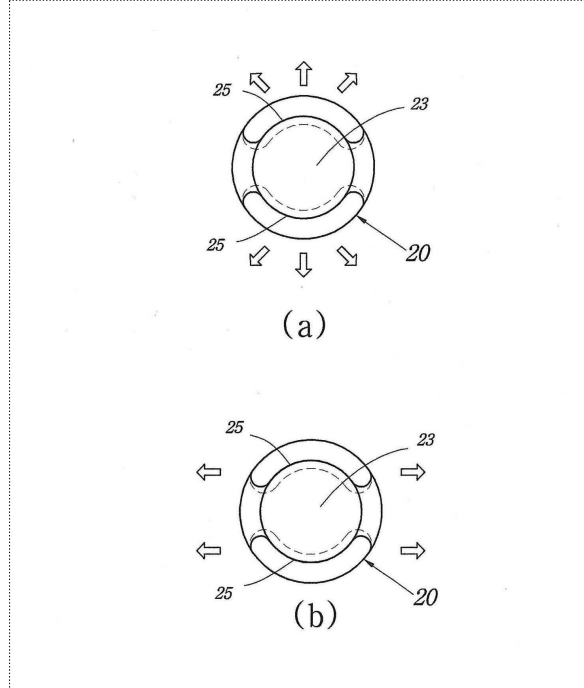
판을 연결하는 연결부(27)를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함으로써 ① 각질을 효율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② 상하방향, 45도 방향뿐만 아니라 일부 좌우방향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방향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나타낸다.

<0006>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딱딱한 각질을 연마제 등으로 갈아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날이 위험스러워 다칠 염려가 없어야 하고, 유해 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출된 것이 표면으로부터 미세하게 돌출된 작은 판의 양측에 미세한 날이 형성된 마이크로 커터가 다수 개가 배열된 각질제거판으로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각질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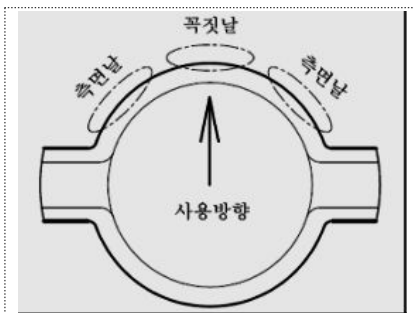
<0011>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050> 도 8 (a)에서 마이크로 커터(20)의 사용 가능 방향을 도시한 것으로 마이크로 커터(20)의 절삭날(25)이 외측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각질을 파고들면서 자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사용방향의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하방향뿐 아니라 좌우 45도의 방향도 가능하고, 도 8 (b)의 경우에는 평면 돌출판(23)으로부터 형성된 절삭날(25)로 인해 일부 좌우방향도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다수개의 마이크로 커터(20)를 이용하여 적당한 간격과 효과적인 방향으로 배열하게 되면 제거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도 8 마이크로 커터의 사용 가능 방향을 나타내는 평면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따른 작용효과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이 평면상에서 연결부로부터 볼록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의 각질제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짓날과 측면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고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의 꼭지부 절삭날부터 각질 내로 삽입되며 양 측면부 절삭날이 꼭지부 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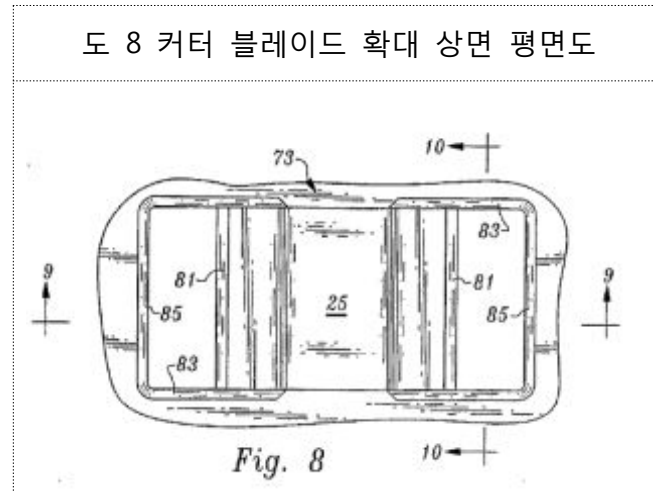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야채, 과일 등의 식재료를 깎기 위한 강판으로서 날의 형상은 긴 곡선 형상으로 직선에 가깝고, 사용방향과 관련하여 "1개의 날의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에서 갈 수 있다." (갑 제4호증, 식별번호 [55]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양 방향(날선단이 형성되어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나아가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 돌출판 및 그의 외곽을 따라 형성된 날의 원형 또는 다각형 형상 및 위 평면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된 연결부에 대한 구성 및 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한편, 선행발명 4에 개시된 날(블레이드)의 경우, 아래 도 8(갑 제8호증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방향 절삭치(73, bi-directional teeth)의 날 단면(81)이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 돌출판에 대응하는 절삭치(73)의 평면 부분 [양측으로 날 단면(81)이 형성되어 있는 절삭치의 중간 부분으로서, 도 8의 도면부호 25 부분]이 블랭크(78)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커터(날)의 기본적인 형상 및 구조 자체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그것과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 돌출판(23), 절삭날(25)의 각 형상 및 구조에 따른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의 외곽을 따라 형성된 예각의 절삭날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각질이 절삭되고, 절삭 방식에 있어 평면 돌출판이 먼저 피부에 접촉함으로써 피부를 일단 눌러준 후 예각의 절삭날이 평면 돌출판의 높이만큼 피부의 각질을 절삭하게 되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4에서는 직선으로 형성된 양방향 절삭치에 의해 앞뒤 방향으로만 절삭이 가능하고(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42] 참조), 절삭 방식에 있어서도 절삭치의 평면 부분이 아닌 날 부분(앞서 본 도 9의 도면부호 75, 76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절삭치의 날 부분이 가장 먼저 피부와 접촉한 후 블랭크로부터 돌출된 높이만큼 움직여 피부의 각질을 절삭하게 된다(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5

3) 참조). 결국 양 발명은 위와 같은 전체 날 부분의 형상 및 구조 차이로 인해 사용방향, 사용태양 등에 있어 상이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1 및 4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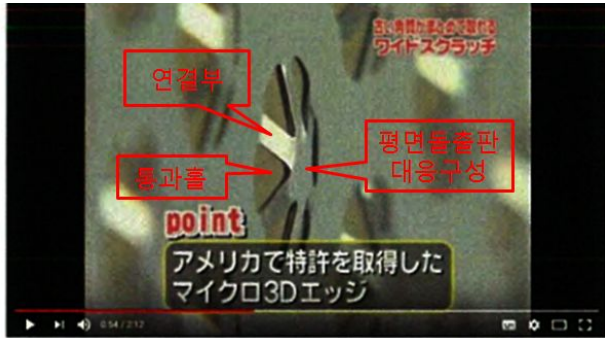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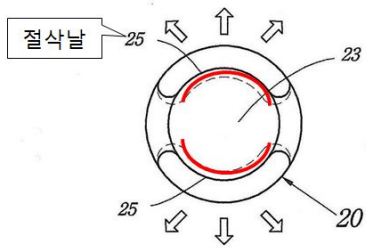
(4) 차이점에 대한 종합 판단

결국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인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 및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각 구성을 나타내는 주요 도면 및 영상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5
 (도 2)	 <갑 제12호증의 2(동영상)의 54초 부분>
 (a) (도 8)	 <갑 제12호증의 2(동영상)의 1분 5초 부분>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5와 비교하여, 각질제거판의 외측면(기판)으로부터 각질을 제거하는 미세 칼날부(마이크로 커터)가 다수 배열되어 있는 각질제거판으로서, 돌출판이 각질제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돌출 형성되어 있고, 위 돌출판과 외측면 사이에 각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통과홀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3)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평면 돌출판(23)이 외측면(21)으로부터 0.5mm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된데 비하여, 선행발명 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 돌출판(23)과 달리 돌출되는 부분의 높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절삭날(25)이 위치한 평면 돌출판(23)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평면 돌출판(23)과 외측면(21)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5는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부위가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를 통해 기관의 외측면과 연결되어 있고, 절삭날이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 양 측부 직선 부분,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주위와 연결부 사이의 오목한 부분, 통과홀과 접하는 외측면 선단에 각 형성되어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앞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및 4와의 대비 검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평면 돌출판의 돌출 높이를 0.5mm 이하로 한정된 것은 선행발명 4의 '절삭날(75, 76)의 돌출 높이 수치를 0.635mm 이하로 한정된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 차이점 2

그러나 차이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평면 돌출판(23)의 형상을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하고, 위 돌출판의 외곽을 따라 절삭

날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질제거판의 외측면과 위 돌출판을 연결하는 연결부(27)를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하는 구조임에 비하여, 선행발명 5는 작은 돌출 평면 부위가 중앙에 위치하고, 기관의 외측면과 위 평면 부위를 연결하기 위하여 각 평면 부위별로 6개씩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가 존재하며, 절삭 기능을 하는 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그것(평면 돌출판의 외곽을 따라 형성된 절삭날)과는 달리 6개씩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 양 측부 직선 부분,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부위와 연결부 사이의 오목한 부분, 통과홀과 접하는 외측면 선단의 오목한 부분에 각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돌출판과 연결부의 전체 형상 및 구조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절삭 기능을 하는 날의 구체적 위치, 형상 등도 매우 상이하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삭날은 각질제거판(또는 그의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위치한 돌출판의 형상에 따라 '평면적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절삭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고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의 꼭지부 절삭날부터 각질 내로 삽입되고 양 측면부 절삭날이 꼭지부 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된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⁵⁾, 선행발명 5의 절삭 기능을 하는 날은 각 형성 부위 중 오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날이 형성된 6개씩의 방사형 연결부 양 측부 직선 부분에 '경사를 가진 상태로' 형성될 것인바, 양 발명의 절삭날이 절삭 대상(각질)에 닿는 위치와 방향이 상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절삭 대상에 가하여지는 물리적 힘도 상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결국 위와 같은 선행발명 5의 날 형상 및 구조로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삭날에

5)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은 원형의 평면 돌출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선 부분의 절삭날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아 이에 따라 '절삭날이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으로 인해 절삭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는 다'는 효과가 저감될 수도 있다고 보이나, 다각형의 모서리 등 부분을 통해 절삭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선행발명 5와 대비되는 위 구성 및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평면 돌출판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른 작용효과를 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또는 5 및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차이점에 대한 종합 판단

결국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인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또는 5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5 또는 5 및 4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전부 인용하는 독립항 발명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 또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	----	-----

	판사	김병국
--	----	-----

	판사	정희영
--	----	-----